

2020년

제한적 의료기술(국고지원) 신청공고 안내

●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란?

신의료기술평가 결과, 연구가 더 필요하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한 의료기술 중, 의료현장 도입이 시급한 의료기술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정 기간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● 신청 · 접수기간 | 2020.3.23.(월) ~ 5.22.(금) 15:00 까지

● 신청자격 | 「의료법」 제3조에 의한 '의료기관'

● 신청방법 |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⇨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⇨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● 연구형태 |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

● 지원 규모 및 시기 | 예산 편성 및 연구 수행에 따라 변동 가능

● 시술 인정 기간 | 3년 이내(보건복지부 고시 기간 이내)

● 평가 방법 | 서면 및 대면평가(6월 예정)

● 대상 의료기술

- ① 콘택트렌즈형 센서를 이용한 24시간 연속 안압 측정
- ② 전립선 횡파 탄성 초음파 검사
- ③ 내시경 귀수술
- ④ 고주파 영역 뇌파 진동 국지화 분석
- ⑤ TEG platelet mapping system을 이용한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(아스피린, P2Y12)

● 문의처

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

Tel. 02-2174-2729, 2809, 2726

※ 자세한 사항은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신청공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